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3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김형동·조지연·안철수

김소희 • 우재준 • 강명구

유용원 · 임이자 · 고동진

김예지 · 김기웅 · 김위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,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, 연 1회,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 일로 축소하려는 것임(안 제7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 중 "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"를 "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"으로, "30일"을 "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육아휴직 급여) ① 고용노	제70조(육아휴직 급여) ①
동부장관은 <u>「남녀고용평등과</u>	「남녀고용평등과
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	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
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	<u>률」 제19조제1항</u>
<u>30일</u> (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	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
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	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
되는 기간은 제외한다) 이상 부	
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	
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	
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	
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	
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